

보도시점 2024. 2. 29.(목) 11:30
< 2.29.(목) 석간 >

배포 2024. 2. 28.(수)

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총 31개 개정 추진

- 해제3개, 신규4개, 기준변경 16개, 기술범위 구체화 8개
- ‘신고’ 대상 기술의 신속한 수출심의 위한 심의기준 개선
- 조선, 배터리, 자동차 분야에서 포괄심사 등 수출심사 간소화 추진

반도체, 자동차·철도, 철강, 원전 등 총 31개 국가핵심기술이 기술변화 등이 반영되어 신규지정, 해제, 기준변경, 범위 구체화 등 대대적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.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.29(목) 제49회 산업기술 보호위원회(이하 위원회)를 열고,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하였다.

이번 개정은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중 9개 분야* 31개 기술을 정비하는 대규모 개정이다. 세부내용(구체적 기술명 등)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고시(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)될 예정이다.

* 개정 검토원칙 : ①보호대상 기술명을 구체적으로 명시, ②기술상황을 반영한 기준상향 및 변경, ③보호필요성 높은 기술의 신규지정, ④보호필요성이 낮은 기술의 해제

* 개정대상 분야 : 반도체, 전기전자, 자동차·철도, 철강, 조선, 원자력, 우주, 기계, 로봇
 - (해제) 원자력 분야 3개 기술 / (신규) 기계, 원자력, 철도 분야 4개 기술
 - (기준변경) 자동차, 철강, 조선, 철도, 로봇, 우주 등 분야 16개 기술
 - (기술범위 구체화) 반도체, 기계, 전기전자, 조선 등 분야 8개 기술

또한 위원회는 기술수출·인수합병(M&A) 심의기준 개선도 논의하였다. 정부지원 없이 개발한 신고대상 기술이 과도한 심의항목을 적용받아 수출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고와 승인 심의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, 심의기준 내 모호한 내용은 구체화하는 한편, 기술유출 우려가 높은 인수합병(M&A)은 특화항목 신설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.

* 정부지원 연구개발(R&D) 국가핵심기술 : 수출승인 / 기업 등 자체 R&D 국가핵심기술 : 수출신고

한편 안덕근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, 2024년 산업기술 보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. 특히 작년 반도체, 생명공학 분야에 도입한 포괄심사제도 등 심사 간소화 를 금년에는 조선, 배터리, 자동차 분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* '24 기술보호 정책방향 : ① 촘촘한 보호제도(산업기술보호법·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) ② 적극적 규제개선(보호위 개최주기 단축, 업종별 수출심사제도 간소화 등) ③ 정책소통 강화

참고로, 이번 위원회에서 반도체 3건, 디스플레이 2건, 이차전지 6건, 자동차 1건, 생명공학 3건의 국가첨단전략기술·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출 승인이 있었다.

담당 부서	무역안보정책관 기술안보과	책임자	과 장	최성준 (044-203-4850)
		담당자	사무관	강은진 (044-203-4852)

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요

- ☐ (일시) 2. 29(목) 10:00~11:30
- ☐ (장소) 서울(대한상의 8층 회의실)
- ☐ (참석자) 산업부 장관(주재), 산업기술보호위원, 안건 관계자 등

<세부 진행계획>

시간	진행계획	비고
10:00~10:05	■ 개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모두발언	언론공개
10:05~11:15	■ 의결안건 상정, 토의 및 심의 · 의결 - 반도체 관련 안건 - 디스플레이 관련 안건 - 이차전지 관련 안건 - 자동차·철도 관련 안건 - 생명공학 관련 안건 - 기타 안건	안전 소관과
11:15~11:25	■ 종합토의	참석위원 전체
11:25~11:30	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마무리발언 및 폐회	

※ 모두발언 언론공개, 이후 비공개 전환

1. 촘촘한 기술보호제도 마련·운영

- ① 산업기술보호법(법사위 계류) 신속 개정 노력
- ② 법 개정 후속 조치 및 기술보호 강화를 위해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 추진
- ③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①법령 개정안 마련·검토, ②민관공동 기술 보호 정책이슈 상시 발굴 체계 확립

2. 규제개선과 현장중심 제도 운영

- ① 국가핵심기술 관리 강화와 규제 개선의 합리적 병행
 - (규제개선)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주기 단축, 국가핵심기술 현행화, 분야별 수출심사제도 개선을 통해 심사기간 단축 등 규제개선
 - (실태조사) 기업현장의 기술보호 취약점 보완 및 기술보호 인식제고를 위해 컨설팅 중심의 국내·외 현장실태조사 확대
- ② 전문인력 관리
 - (첨단전략기술 전문인력) 첨단전략산업법(제14조)에 따른 전문인력을 지정하고, △고용계약 체결, △출입국 정보 등 관리 추진
- ③ 기술보호 시스템 강화 및 보안인력 양성
 - (기술보호역량) 기업의 보안역량에 따른 보안컨설팅, 보안설비 구축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기술보호역량 제고
 - (보안인력 양성) 산업환경 내 중요자산 전반의 보안위험에 대응 가능한 융합형 보안전문인력 및 R&D인력 양성 추진

3. 정책소통 강화로 기술보호 인식 제고

- (기업협의회) ‘민-관 기술보호 협의체’ 분기별 개최를 통해 국가핵심 기술 보유기관과 정부간 산업기술보호 정책·제도 공유